



### 유엔 소식

#### 유엔, 직원에 의한 성희롱 근절 위한 전문가 패널 위촉

지난 19일 유엔은 전 세계적으로 유엔 직원 등에 의해 수년간 지속되어 온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가 패널을 위촉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 패널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직원 등에 의해 자행된 성에 기반한 폭력과 희롱 등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조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패널은 성소수자, 여성, 아동과 인권, 인신매매, 전쟁범죄, 국제법 및 통상 등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2017년 발표한 전략의 일환으로 성희롱 예방 및 책임소재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수년간 유엔은 아프리카 내 유엔 평화유지군 등 유엔 관련 직원에 의한 성착취 및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 작성된 유엔 내부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티 주둔 평화유지군이 150건의 성폭행과 성 착취를 자행했으며, 지난 12년간 유엔 평화유지군 및 직원들이 저지른 관련 범죄는 약 2,000여건에 달한다. 이 중 300건 이상이 아동이 피해자였지만, 법의 심판을 받은 가해자는 극소수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달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기구와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지난 2년간 성희롱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본 조사는 유엔, 산하 기구, 하청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3만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거 유엔에서 자문으로 활동했던 럿거스 대학의 샬롯 번치 교수는 유엔의 성희롱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유엔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미투 운동에도 힘을 실어주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유엔은 유엔 직원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가동 핫라인과 진정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였다.

## 국가 인권기구 소식

###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반NGO 법률에 우려 표명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NGO에 대한 감시, 업무 방해, 감금 위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전 세계의 탄압(Laws Designed to Silence: the Global Crackdown 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이라는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수의 국가가 NGO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기술과 억압적 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에는 반 NGO적인 법률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50여개 국가가 나열되어 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국가가 NGO의 필수적 업무 이행을 방해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제약과 제한을 두고 있는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고, 시민사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40개의 법안이 이행되거나 이행될 예정이다. 그는 또한 인도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엠네스티 사무소 역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유엔 소식

### 인권이사회 제40차 회기 개최

인권이사회는 25일 세네갈의 콜리 세크 (Coly Seck) 의장의 주재로 제40차 정기 회기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미첼 바첼렛 인권최고대표, 마리아 페르난다 가르셔스 총회 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받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영역이 줄어들고, 제노포비아, 인종차별, 무슬림 혐오, 무관용 등이 확산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와 독재 사회 모두에서 혐오가 주류화 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대화와 협력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회기에서 인권이사회는 35명 이상의 인권 전문가, 단체, 메커니즘 등을 통해 다양한 문제에 대한 120여개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는 여성인권옹호자의 상황에 대한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들이 직면한 난제와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다양하고 포용적이며 강력한 운동 등을 지지하기 위한 모범사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인종적 및 종교적 혐오를 비난한 1960년의 UN 총회결의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1963년의 UN 총회결의 등을 통하여 만들어졌다. 1963년의 총회결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협약초안이 1965년 12월 21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69년 1월 4일 발효하였다.

이 협약에는 25개 조문이 3개의 부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인종차별의 정의에 대해, 제2조에서는 인종차별철폐를 근절하고 모든 인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체약국의 조치를, 제3조에서는 인종분리와 흑백분리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인종혐오를 촉발하는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을, 제6조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을 제공할 것을, 제7조에서는 인종집단 간의 이해와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인종차별 철폐에 있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를 예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제8조에서 16조에 걸쳐 협약의 이행과 감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행감시기구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국가 간 고발제도와 개인의 고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 간 고발은 자동적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의 고발은 체약국의 특별선언이 있어야 인정된다. 제3부에서는 제17조에서 25조에 걸쳐 협약의 비준, 유보, 발효, 국가 간 분쟁해결, 개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서 유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유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체약국의 2/3이상이 유보에 반대하면 유보는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제20조 2항) 제22조에서는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ICJ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3월 UN주요회의 일정

날짜	회의	비고
2/18-3/8	사회권 규약위원회 제65차 회기	
2/18-3/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72차 회기	
2/25-3/22	인권이사회 제40차 회기	
3/11-4/5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1차 회기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황소영 2125-9884 sygraceh86@nhrc.go.kr